

의안번호	2213639
의 퇴 인	이훈기의원
회 답 일	2026. 1. 26.
추 계 번호	25B565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안 제7조의2)	500	500	500	—	500	2,000	400

주: 최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식 및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u>10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제2항) ※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년마다 현행 ‘5년 단위의 계획’에서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매년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u> (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제1항)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기본계획을 5년마다 현행 '5년 단위의 계획'에서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대상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수립 주기에는 변동이 없으며, 현행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최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 시 소요 예산은 14억 2,000만원임 [표 2] 최근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소요 예산 <table> <tr> <th colspan="2">구 분</th><th>수행 시기</th><th>소요 예산</th></tr> <tr> <td rowspan="2">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3~'27) 수립 연구 용역</td><td>1차(사전기획)</td><td>'21.9.~'22.1.</td><td>850백만원</td></tr> <tr> <td>2차(고도화)</td><td>'22.4.~'23.2.</td><td>570백만원</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수행 시기	소요 예산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3~'27) 수립 연구 용역	1차(사전기획)	'21.9.~'22.1.	850백만원	2차(고도화)	'22.4.~'23.2.	570백만원
구 분		수행 시기	소요 예산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23~'27) 수립 연구 용역	1차(사전기획)	'21.9.~'22.1.	850백만원											
	2차(고도화)	'22.4.~'23.2.	570백만원											
2	안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 변경 — (현행) 5년 → (개정안) 매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주기 변경(안 제7조의2제1항)

- 현행법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 최근 수립 예정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함

[표 3]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개요

용역명	실시년도	예 산(2026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연구용역	2026년 ²⁾ *차기(제3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2030년 실시 예정	5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정안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0억원(연평균 4억원)으로 추계됨

1)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23～’27)은 2023년 수립(2022년 연구용역 실시)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당초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은 2028년 수립(2027년 연구용역 실시)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계획 변경으로 수립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은 2026년 수립(2026년 연구용역 실시) 예정이며, 제3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31～’35)은 수립 주기에 맞춰 2031년 수립(2030년 연구용역 실시) 예정임

[표 4]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주기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현행 (A)	5년마다 수립	-	-	-	500	-	500	100
개정안 (B)	매년 수립	500	500	500	500	500	2,500	500
추가재정소요 (C=B-A)		500	500	500	-	500	2,000	400

주: 최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식 및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최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식 및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